국가계약을 통한
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

2026. 11. 11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1

Ⅱ. 추진 체계 5

Ⅲ. 세부 추진방안 6

Ⅳ. 보완방안 13

Ⅴ.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4

Ⅰ. 추진 배경

◇ 국가계약 제도를 **지방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** — **국가·공공기관 발주 시장**(145.5조원, 공공조달 238.5조원[25년]의 61%)**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확대**

- ’25.11월 「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(공사)」, ’26.4월 「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(물품·용역)」에 이은 **보완·확장 대책**
- **기존 대책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한층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마련**

1 공공조달 현황

□ (**공공계약 전체**) ’25년 **공공조달 계약규모** 238.5조원 중 **수도권기업 계약실적**(107.8조원)은 **45.2%**로 국토면적(11%) 대비 **수도권 쏠림 현상**

< ’25년 수도권-비수도권 소재지별 공공조달 계약실적(나라장터+자체조달) **>**

(금액 : 조원)

구 분	수요기관 발주 실적 (A)	조달기업 수주 실적 (B)	수주-발주(B-A)
합 계	**238.5**	**238.5**	-
수도권	**78.0** (32.7%)	**107.8** (45.2%)	**29.8**
비수도권	**160.5** (67.3%)	**130.7** (54.8%)	**△29.8**

□ (**권역별 분석**) ’25년 **나라장터** 거래규모 **157.5조원**[1] 중 **비수도권 발주**는 **105조원**, 이 중 **비수도권 기업 수주**는 **70.2조원에 그쳐 약 1/3**(34.8조원)은 **수도권 유출**

○ 특히, 지방정부(82.3%)에 비해 **비수도권 소재 국가기관**(53.1%) **및 공공기관**(49.0%)의 **권역 내 기업**과의 **계약 비중**이 **현저히 낮음**

< ’25년 권역별 수도권·비수도권 내 조달기업 계약현황(나라장터 발주건 기준) **>**

구분 (발주기관 기준)	조달기업 수		발주 현황(조 원, %)		권역 내 발주-수주 실적*(조원, %)	
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	수도권	비수도권
합 계	**63만개(157.5조원)**		**52.5**	**105.0**	**43.4(82.6%)**	**70.2(66.9%)**
국가기관	32만 개 (79조원)	31만 개 (79조원)	6.0	18.9	4.4(73.3%)	10.0**(53.1%)**
공공기관 (기타기관포함)			17.5	31.9	13.1(74.6%)	15.7**(49.0%)**
지방정부 (교육기관포함)			29.0	54.2	25.9(89.5%)	44.5**(82.3%)**

* 수도권 발주-수도권 기업, 비수도권 발주-비수도권 기업 계약 비중('25, 나라장터 발주건)

1)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·계약이 이루어진 금액(국방부, 한국전력 등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거래액 제외, 사립학교 등 민간 계약실적 포함)

□ (**분야별 분석**) **공사 분야**는 **권역 내 선순환이 상당 부분 작동**하지만, **물품·용역 분야에서 권역별 격차**가 뚜렷

○ **공사**는 **수도권**(81.6%)과 **비수도권**(78.7%) **모두 발주금액의 약 80%를 권역 내 기업이 수주**하여 지역 발주가 지역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

○ **물품·용역**은 수도권 발주의 권역 내 수주비중(물품 77.3%, 용역88.5%)에 비해 **비수도권은 물품 61.2%, 용역 53.7%**에 그침

- 수도권 - 비수도권 권역별 격차가 물품 16.1%p, 용역 34.8%p로 공사(2.9%p)의 5~12배 수준

< '25년 분야별 수도권·비수도권 내 조달기업 계약현황(나라장터 발주건 기준) **>**

구분 (발주기관 기준)		수요기관 발주 현황				해당 권역내 기업* 계약 현황 * 수도권발주는 수도권 기업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기업 계약			
		공사	물품	용역	합계	공사	물품	용역	합계
수도권 (서울, 경기, 인천)	국가	1.3	2.4	2.4	6.0	0.8 (63.2%)	1.7 (71.4%)	1.9 (80.7%)	4.4 (73.3%)
	지방정부 (교육기관포함)	12.8	7.7	8.5	29.0	11.6 (91.0%)	6.4 (83.9%)	7.8 (92.2%)	25.9 (89.5%)
	공공기관 (기타기관포함)	6.3	4.9	6.3	17.5	4.2 (66.3%)	3.4 (69.8%)	5.5 (86.5%)	13.1 (74.6%)
	소 계	20.4	14.9	17.2	52.5	16.7 (81.6%)	11.5 (77.3%)	15.2 (88.5%)	43.4 (82.7%)
비수도권	국가	5.6	6.7	6.6	18.9	4.1 (72.5%)	3.0 (44.6%)	3.0 (45.1%)	10.0 (53.1%)
	지방정부 (교육기관포함)	26.3	15.6	12.2	54.2	24.6 (93.4%)	11.5 (73.8%)	8.4 (69.0%)	44.5 (82.2%)
	공공기관 (기타기관포함)	14.0	9.6	8.4	31.9	7.5 (53.5%)	5.0 (52.1%)	3.2 (38.1%)	15.7 (49.0%)
	소 계	46.0	31.8	27.2	105.0	36.2 (78.7%)	19.5 (61.2%)	14.6 (53.7%)	70.2 (66.8%)

⇒ **분야별 시장구조**에 맞추어 **우대방안**을 차등 설계

✓ **공사 분야**(지역경제 환류 효과 제고): 권역 내 선순환이 이미 작동하는 **'현장 귀속형 시장'**으로, 비수도권 내에서도 현장 소재 지역기업에 수주가 돌아가도록 **지역업체 우대를 정교화**

✓ **물품·용역**(비수도권 기업 우대): 비수도권 발주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**'역외 유출형 시장'**으로, **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반을 확대**

2 최근 대책('25년 이후) 주요 내용

1 「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」('25.11.19, 경제관계장관회의)

○ (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) **지역제한 허용금액***을 현재 **공공기관 88억원** 미만, **지자체 100억원** 미만에서 모두 **150억원** 미만**까지 **상향**

* 국가의 경우 정부조달협정(GPA)로 인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(現 88억원)을 초과하는 추가 확대는 곤란하나, 공공기관·지자체는 고시금액(265억원) 대비 여력 有

**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과 경쟁 제한 및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

○ (지역업체 참여 우대) **낙찰자 평가** 시 적격심사 **지역업체 참여 평가**(신인도 가점) **근거 신설** 및 종합심사 **지역경제기여도**(가점제) **만점 기준** 및 **가점 상향***

*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비율 상향(20%→30%) 및 가점 확대(0.6점→0.8점)

- **기술형 입찰의 경우, PQ**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)**에서 지역업체 참여 평가*** 및 **낙찰자 평가시 지역업체의 실질적 공사 참여 기회 확대****

* 종심제 공사에서만 지역업체참여도(배점, 5점) 평가 적용 → 기술형 입찰까지 확대 적용

** 지역기업 보유 자재·장비 활용 등 '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' 마련 및 가점(2점) 부여

2 「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(물품·용역)」('26.4.24, 비상경제본부회의)

○ (입·낙찰 우대) **물품·용역 적격심사** 및 **다수공급자계약(MAS) 2단계 경쟁**에서 **비수도권 기업 입찰 가점 신설*** 및 **동일 조건시 우선 사용****

* 본사 이전 기업 > 인구감소지역 기업 > 비수도권 기업 順 신인도 가점 차등 부여

** 물품·용역 적격심사시 동가입찰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(MAS 2단계 경쟁은 품질관리 평가점수 동일 시)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

○ (진입장벽 완화) **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**에 **1인견적 수의계약 확대**(2천만→5천만 원) 및 **MAS 2단계경쟁 예외 허용***

*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 기준금액 상향 : 5천만→1억원(중기간은 1억→2억원)

○ (판로지원) **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** 및 **맞춤형 컨설팅 제공,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**(G-PASS) **지정 시 가점 부여** 등

3 기존 대책의 평가

□ 두 차례 대책으로 **공사**는 "**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**", **물품**과 **용역**은 "**비수도권 기업 우대**"라는 기본 틀 마련하였으나, 현장 적용 과정에서 **보완 필요성 제기**

❶ (공사 **지역기업 우대 한계**) **정부조달협정**(GPA)상 지역제한 상한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*에 묶여 있어, **국가기관 공사는 지역기업 우대수단이 제한적**

* (국제입찰의무 고시금액) **국가기관 88억원 / 공기업·준정부 265억원 / 지자체 265억원**

☞ 국가기관 공사에서는 지역제한을 대신하여 **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역업체 참여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**할 필요

❷ (공사 **지역기업 참여 한계**) PQ·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하였으나, 대형공사 **실적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적어 효과가 제한적**

☞ 오히려 실적을 갖출 지역 내 소수 업체에 수주가 쏠리는 과점 우려가 있어,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**지역 중소기업**의 **입찰참여 기회를 확대** 필요

❸ (물품·용역 **수도권 쏠림 과도**) **공사 분야**는 '**광역단위별 현장연계 체계**'로 인해 지역 내 선순환이 상당 부분 작동하지만, **물품·용역 분야**는 **수도권 유출이 큼**

* **비수도권 발주-비수도권 수주 비율**(%) : (공사) 78.7 > **(물품) 61.3** > **(용역) 53.7**

☞ 물품·용역 분야 **비수도권 기업 가점 확대** 및 **실효성 확보** 필요

❹ (물품제조·용역 **지방이전 인센티브 부족**) 지방이전 초기에는 설비투자 부담과 매출 공백으로 **경영상태 및 납품실적 평가**에서 **불리**

☞ 이전으로 인해 **평가점수 하락이 불가피한 항목**은 **일정기간 평가를 유예**하거나, 이를 만회할 수 있는 **충분한 인센티브 제공** 필요

❺ (공통 **인구감소지역 지원수단의 한계**)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는 대부분 수의계약, 나라장터 쇼핑몰(MAS) 등 **소액·단가계약 위주**로 적용

☞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기업과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므로 **인구감소지역 기업 간 제한경쟁** 등 별도 우대방안 마련 필요

Ⅱ. 추진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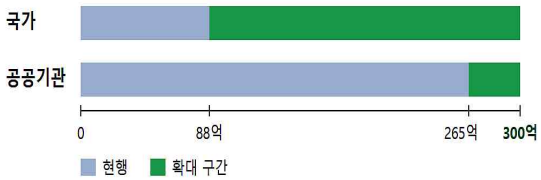
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

'25.11(공사)·'26.4(물품·용역) 대책의 보완·확장 — 5대 과제 개념도

공사 | 광역 기반 지역업체 우대

① 지역기업 운동장 넓히기 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

적용 기준금액을 국가·공공기관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



더 큰 공사 실적 → 시공능력 상승 → 지역업체 체급 성장

지역업체 수주 규모 최대 8,000억원 확대

② 지역기업 참여 확대 —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확대

PQ·종심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시평액 2배(예외 3배)까지 인정

예) 300억원 공사, 지역업체 시평액 45억원에 지분 30% 배정



참여 가능 지역업체 수 (토목 2,000억원·지분 10%, 광역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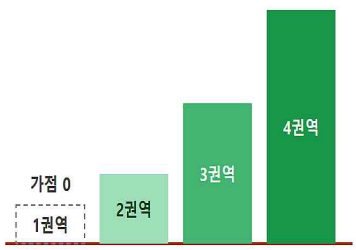


물품·용역 | 비수도권 기업 우대

③ 입·낙찰 평가 우대 정비

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「지방우대지수」에 따라 권역별 차등 · 기술용역까지 확대

「지방우대지수」에 따른 권역별 가점 차등



기술용역까지 비수도권 가점 확대

- 공사 ('25.11 우대)
- 물품·일반용역 ('26.4 우대)
- **기술용역(설계·감리 등)** 비수도권 가점 신설

※ 권역 구분은 「지방우대지수」 기준 / 1권역은 가점 미부여 (가점 크기는 예시)

④ 지방이전기업 평가 우대

이전 후 2년간 이행능력 평가 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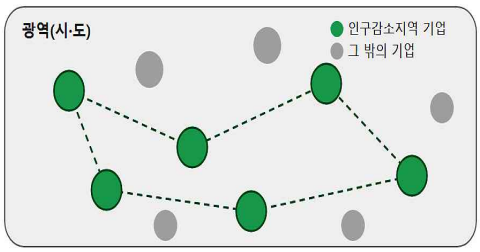
경영상태	만점 처리
납품실적 인정 기간	5년 → 7년
납품실적 만점 기준	요구실적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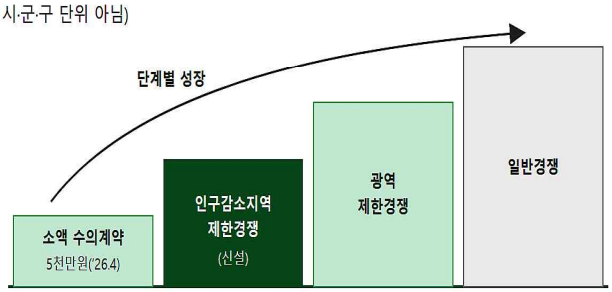
이전 직후부터 온전히 경쟁
→ 공공조달이 지방 이전을 뒷받침

공통 | 인구감소지역

⑤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허용 — 공공조달 성장 사다리 구축

광역 내 인구감소지역(시·군·구) 소재 기업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경쟁 (개별 시·군·구 단위 아님)





Ⅲ. 세부 추진방안

1 공사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

□ **(현황) 지역제한경쟁입찰*** 및 **지역의무공동계약****을 **운영 중**이며, **적용여부**는 **발주기관 자율사항**이나 **대부분 적용 중**

*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(광역단위)로 한정(해당 지역업체 수주비율 **100%**)

** 지역업체(광역단위)가 일정비율 이상(국가: **30%** / 지방: **40%**) 공동계약으로 참여

○ **지역제한경쟁입찰**, **지역의무공동계약**은 **발주주체·재원**, **정부조달협정(GPA)*** **비차별 의무**, **공정경쟁** 등으로 인해 **국가-지방 간 차이** 존재

* (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) **국가기관 88억원 / 공기업·준정부 265억원 / 지자체 265억원**

- **지자체 재원**으로 수행하는 **지방공사**는 **지자체 선택**시 **공사 全 구간**에서 **지역의무공동계약**을 할 수 있도록 **허용 중**

< 발주주체별 지역업체 한정입찰 운영현황 >

구분	국가계약법(발주기관 자율선택)		지방계약법(발주기관 자율선택)	
	지역제한경쟁	지역의무공동계약 (최소참여비율 30%)	지역제한경쟁	지역의무공동계약 (최소참여비율 40%)
국가	88억원미만	**88억원미만***	150억원미만	**모든 공사 가능**
공공기관	150억원미만	**265억미만**		

* 이외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지역의무공동계약 가능(4대강,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등)

□ **(평가)** '25년 비수도권 국가·공공기관 발주공사의 **지역업체 한정입찰이 건수 64.2%, 금액 7.0%에 불과**(지자체 발주는 금액 99.6%가 한정 입찰)

○ 특히, **지역의무공동계약**이 **국가·공공기관**의 경우 **고시금액 미만으로 적용대상이 한정**되어 **활용도 저조**(지방공사금액 기준 94% vs 국가(공공기관) 3%)

< 종합공사 발주 주체별 계약형태 ('25, 조달청 직접 발주) >

구분	건수					금액(억원)				
	총계	지역업체 한정입찰			경쟁입찰	총계	지역업체 한정입찰			경쟁입찰
		소계	지역제한 입 찰	지역의무 공동계약			소계	지역제한 입 찰	지역의무 공동계약	
지방	462 (100%)	458 (99.1%)	**151 (32.7%)**	**307 (66.4%)**	4 (0.9%)	201,386 (100%)	200,610 **(99.6%)**	**11,685 (5.8%)**	**188,925 (93.8%)**	776 (0.4%)
국가+공공기관	463 (100%)	297 **(64.2%)**	**262 (56.6%)**	**35 (7.6%)**	166 (35.8%)	271,227 (100%)	18,942 **(7.0%)**	**10,708 (4.0%)**	**8,234 (3.0%)**	252,285 (93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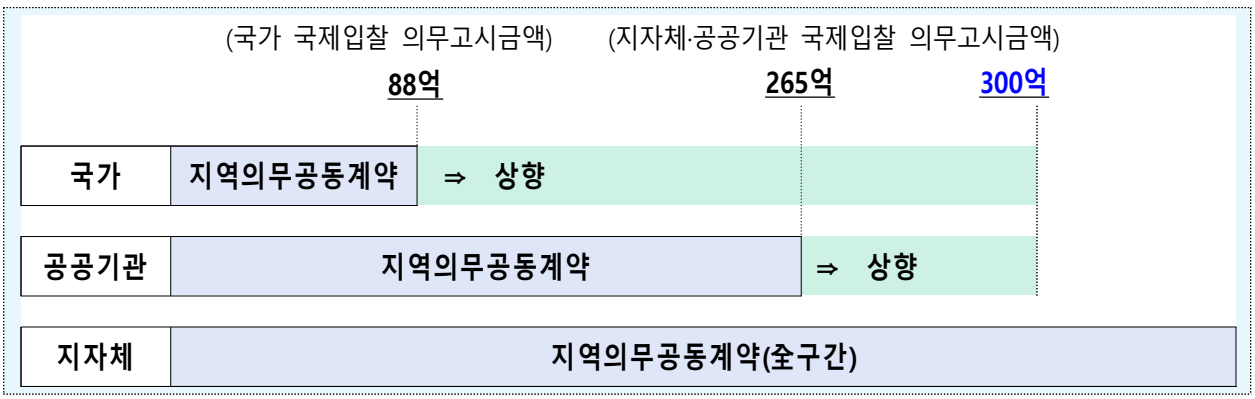
※ '25년 조달청 직접 발주, 입찰공고 추정금액 기준

□ **(개선안) 지역업체의 실적 축적과 체급 성장 지원을 위해,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**(現 국가88억원, 공공기관265억원미만 → 改 300억원미만)

○ **공사규모, 지역업체의 이행능력 범위** 등을 고려하여, 現**간이형 종합심사제**(→ '27.1월 이후**기술형 적격심사제**)가 적용되는 **300억원 미만까지 확대**

- 다만, **외국건설업체**가 **공동수급체**(consortium) **대표자로 참여**하거나, 참여가능 **지역업체가 10개사 미만**인 경우 **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제외**
(☞ 정부조달협정(GPA) 및 지방계약법령과의 정합성 유지)

<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 >



< 발주 주체별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비교 >

구 분	국가기관(국가계약법)	지방정부(지방계약법)
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	5인 이하 (**1,000억원이상**, 10인)	5인 이하 (**500억원이상**, 10인)
② 1개사 당공동수급체 최소 참여비율	**10% 이상** (1,000억원이상, 5%)	**5% 이상**
③ 구성원 수 및 최소 참여비율 조정 범위	각각 20%이내	
④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포함 요건	지역업체 1인 이상	
⑤ 제한사항	▸ 구성원이 다수의 공동수급체와 중복구성 금지 ▸ 구성원간 계열회사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) 참여 금지	

※ 시뮬레이션: 지역업체 수주금액 최대 8,000억원 확대 추정

■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은 약 **1.6조원**최근3년평균 **증가**(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 비중은 기존3% → 개선6%) → **지역업체 수주금액**은 **최소 5,000억원~ 최대 8,000억원 증가**
('23~'25 3개년 평균, 지역업체 최소30%~최대49% 참여, 조달청 직접 발주 기준)

2 공사지역업체 시공비율 확대

□ **(현황 및 평가)** '25.11월,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PQ입찰참가자격심사, **종합심사낙찰제** 대상 공사의 **지역업체 우대조치 마련**

< PQ 및 낙찰자 평가기준 개선방안 >

구분	종합심사낙찰제	기술형 입찰
PQ	지역업체참여 배점제 유지	**지역업체참여 배점제 신설** (기존 無 → 100점 만점에 5점)
낙찰자 평가	▸ **지역업체참여 만점 기준 및 가점 상향** · (기준)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→ 30% · (가점) 0.6 → 0.8점	**가점제 신설** (지역자재·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 2점)

○ 그러나,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 내 시평액 보유업체 부족으로 **실질적인 참여 제한*** 및 **소수 상위 업체의 수주과점** 등 **효과 제한적*** (☞ 업계 애로)

* (현행) 공동수급체 평가시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(시공비율)은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 내에서만 인정(☞ 평가액을 초과하는 지분 배정 시 초과분은 평가에 미반영되어 사실상 불이익)

□ **(개선안)** 지역업체의 **실제 참여 지분**이 **입·낙찰 평가**에 **온전히 반영**되도록 **시공비율**(평가시 인정되는 지분율) **상한**을 **현행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**(최대 3배)로 **확대**

❶ **(시공비율 완화) 공사특성 및 지역업체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2배 범위 이내 우선 적용**(원칙)**하되,** 턴키등대형공사 등은 필요한 경우 **3배 이내***로 **완화**

* 지방계약 및 조달청의 개별 공사 완화 사례(LH 공공주택공사), 지역 내 수주 과점 방지 등을 종합 고려, 필요시(공사규모,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) 최대 3배까지 허용

구 분	대상	국가계약	지방계약
적격심사제	300억원미만	시평액 1배→ **2배**	3배 범위 이내
입찰참가자격심사(PQ)	고난도·200억원이상	시평액 1배 → **2배 원칙** **(필요시 3배 이내)**	2배 원칙 필요시 3배 이내
종합심시낙찰제	300억원이상		

✓ **토목공사, 지분 10% 참여 가능 지역업체(광역 평균)**
- 2,000억원 규모 : (기존) 23.3개社 → (2배) 34.4개社 (+47%) → (3배) 40.5개社 (+74%)
- 3,000억원 규모 : (기존) 16.6개社 → (2배) 28.2개社 (+69%) → (3배) 34.4개社 (+107%)

❷ **(시공비율초과 감점)**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**완화된 시공비율**을 **초과**하여 **입찰**에 **참여**할 경우, **심사 시 업체당 감점*** **처리**

* (지방계약법)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평가항목(업체당 △2점)으로 운용 중

3 물품·용역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비수도권 기업 우대

□ (현황 및 평가) **공사 분야**는 **지역 내 선순환**이 상당 부분 작동하지만, **물품·용역 분야**에서 수도권-비수도권 **권역별 격차**가 **크게 나타남**

○ 특히 용역 분야는, 수도권 발주 용역의 88.5%를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반면, **비수도권 발주 용역의 53.7%만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**

< '25년 수도권·비수도권 내 조달기업 계약현황(나라장터 발주건 기준) **>**

(금액 : 조원)

구 분 (발주기관 기준)	수요기관 발주 현황				해당 권역내 기업* 계약 현황 * 수도권발주는 수도권 기업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기업 계약			
	공사	물품	용역	합계	공사	물품	용역	합계
수도권 (서울,경기,인천)	20.4	14.9	17.2	52.5	16.7 **(81.6%)**	11.5 **(77.3%)**	15.2 **(88.5%)**	43.4 **(82.7%)**
비수도권	46.0	31.8	27.2	105.0	36.2 **(78.7%)**	19.5 **(61.2%)**	14.6 **(53.7%)**	70.2 **(66.8%)**
권역 내 수주비율 간 격차* * 수도권의 수도권내 수주비율 – 비수도권의 비수도권내 수주비율					**2.9%p**	**16.1%p**	**34.8%p**	**15.9%p**

○ '26.4월 **물품·일반용역 분야**에 **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**이 **마련***되었으나, 제도화 과정에서 **세부기준의 구체화** 및 **적용범위 확대**를 통한 **실효성 제고** 필요

* 물품·용역 적격심사·MAS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추가·신설('26.下) (본사 이전 > 인구감소지역 >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 차등 부여 및 수도권과의 거리 반영 고려)

- (**물품·일반용역**) 행안부의 **지방우대지수**와 **연계**하여 **비수도권 기업 가점**을 **지역별로 차등 부여**

- **(기술용역)** 비수도권 가점이 없는 **설계·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**에도 **비수도권 기업 우대 도입**

□ (개선안) 행안부「**지방우대지수**」에 따라 **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권역별***로 **차등화**하고, 그간 우대장치가 없던 **기술용역까지 확대 적용**

* 행안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(1권역수도권 ~ 4권역낙후지역)으로 지정하여 고시(11.3)

✓ **행정안전부 「지방우대지수」 개요**

- **(목적)** 정부의 정책·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다양한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에 대한 실질적 우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표로서 설계
- **(구성)** 서울까지 거리, 지역별 사회·경제적 발전 정도, 인구감소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영
- **(활용)** 지수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(권역별 지자체만 공개)*

* 228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, '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' 고시(11.3 시행)

❶ (물품·일반용역 **지방우대지수 권역별 차등화**) **비수도권 기업 신인도 가점**('26.4월 발표)을 「**지방우대지수**」에 따라 **소재 권역별로 차등 부여**

- **비수도권 이전**에 따른 **가점**도 **이전 권역별 차등**하고, **이전 후 2년간** 부여

< 물품·일반용역 비수도권 기업 신인도 가점(안) >

✓ **물품·일반용역 적격심사**

- **이전 여부** : **[1→4권역]** 3.0점 > **[1→3권역]** 2.0점 > **[1→2권역]** 1.5점
- **소재 권역** : **[4권역]** 1.5점 > **[3권역]** 1.0점 > **[2권역]** 0.5점

* (신인도 가점 최대한도)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: 5.0점
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, 모든 금액구간 물품구매 : 3.0점

✓ **다수공급자계약(MAS) 2단계경쟁** (단, ()은 용역 가점)

- **이전 여부** : **[1→4권역]** 1.5점(1.0점) > **[1→3권역]** 1.25점(0.8점) > **[1→2권역]** 1.0점(0.6점)
- **소재 권역** : **[4권역]** 1.0점(0.6점) > **[3권역]** 0.75점(0.4점) > **[2권역]** 0.5점(0.2점)

* (신인도 가점 최대한도) 물품 2.5점, 용역 1.5점

❷ (기술용역 **비수도권 우대 신설**) 실적·인력 중심의 **기술용역**(설계·감리 등)에서도 **비수도권 기업**이 **경쟁력**을 **키울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을 신설**

-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신인도 가점 대비 **큰 폭**의 **가점** 부여

< 기술용역 적격심사 비수도권 기업 신인도 가점(안) >

✓ **고시금액 이상**

- **이전 여부** : **(1→4권역)** 1.0점 > **(1→3권역)** 0.8점 > **(1→2권역)** 0.6점
- **소재 권역** : **(4권역)** 0.6점 > **(3권역)** 0.4점 > **(2권역)** 0.2점

* (신인도 가점 최대한도) 고시금액 이상 1.0점

✓ **고시금액 미만**

- **이전 여부** : **(1→4권역)** 3.0점 > **(1→3권역)** 2.0점 > **(1→2권역)** 1.5점
- **소재 권역** : **(4권역)** 1.5점 > **(3권역)** 1.0점 > **(2권역)** 0.5점

* (신인도 가점 최대한도) 고시금액 미만 3.5점

4 물품제조·일반용역 지방이전 중소기업 입찰평가 우대

□ (**현황 및 평가**) 물품·용역 **적격심사** 시 "입찰가격 + **이행능력*** + 신인도"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(85점) 충족시 낙찰

* (이행능력 평가기준) 2.3억 미만, 2.3억~10억원 미만 물품제조: **경영상태**,
10억원 이상 물품제조: **경영상태**, 기술능력, **납품실적**

○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지역경제 여건, 사업기반 제약 등으로 특히 **이행능력 평가**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**낙찰경쟁력 확보 곤란**

□ (**개선**) **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**(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) **중소기업**을 대상으로 **물품제조·용역 적격심사** 시 **이행능력 평가 우대**

❶ (**경영상태 평가 우대**) 물품제조·일반용역**적격심사**(모든 금액구간)에서 **비수도권 이전 중소기업**에 대하여 **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부여**

* (유사) **2.3억원 미만** 계약에서 **소기업·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**의 **경영상태 만점** 처리

- 다만, 조세포탈 등으로 **입찰참가자격 제한**을 받거나 **파산절차 진행** 등으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**적용 제외**

< 지방중소기업 '경영상태 만점처리' 개선 내용>

적격심사 구간	현행		개선
~ 2.3억 미만	소기업, 소상공인, 창업기업	➠	좌동 + **비수도권 이전 중소기업**
2.3억 이상 ~	-		**비수도권 이전 중소기업**

❷ (**납품실적 평가 우대**) 물품제조**적격심사**(10억원 이상)에서 **비수도권 이전 중소기업**의 **실적 인정기간 확대**(5→7년) 및 **만점 기준 완화**(기준실적의 50%)

* (유사) **소기업·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**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**7년으로 확대**

- 다만, 국민의 **생명·안전·보건**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여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**일반 기준**을 적용

< 10억원 이상 물품제조지방중소기업 '납품실적 평가' 개선 내용 >

적격심사 대상	현행		개선
중기업, 대기업	5년이내, 100% 만점	➠	좌동
소기업, 소상공인, 창업기업	7년 이내, 100% 만점		좌동
비수도권 이전 중소기업	(별도기준 없음)		**7년 이내, 50% 만점**

5 공사·물품·용역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 허용

□ (현황 및 평가) **현행 지역제한**(공사 88억원, 물품·용역 2.3억원 미만)은 **시·도 단위**로 운영되어, **지역제한 효과가 광역 내 거점도시**로 쏠리는 경향

○ **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**은 지역제한입찰에서도 **광역 내 대도시 기업과 경쟁**해야 하므로 **실질적인 수주 기회가 제한**

○ **인구감소지역**의 경우 일반적인 지역제한과 구분하여 해당 지역기업의 **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대**할 필요

□ (개선) **고시금액 미만** 계약은 **광역지자체 內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***으로 **참가자격**을 **제한**할 수 있도록 허용

* 특정 인구감소지역 1곳이 아니라 해당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경쟁 범위로 설정 → 광역지자체 기준 제한경쟁 구조 안에서 과도한 경쟁제한 방지

○ 공사현장·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**시·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**발주기관**이 현행 광역 단위 지역제한과 인구감소지역 제한 중 **선택하여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여 **제도 운영**의 **탄력성** 확보

☞ '26.4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 확대(2→5천만원)에 이어 **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**을 도입, '수의계약 →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→ 광역 제한경쟁'으로 이어지는 **공공조달 성장 사다리 확충**

< 물품·용역·공사 제한경쟁입찰 개선 내용>

구간	현행		개선
고시금액* 미만	광역지자체	➠	광역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內 인구감소지역

* (제한경쟁 기준 금액) 물품·용역(2.3억원 미만), 공사(종합 88억원 미만, 전문·기타공사 10억원)

Ⅳ. 보완방안

1 (형식적 이전·참여 방지) 본사 소재지 요건 강화 및 실제 시공여부 확인

○ (공사) 지역업체의 명목상 참여 방지를 위해, 건설기술진흥법 **시공평가** 시 **공동수급체 참여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**하는 **평가항목 신설**국토부

* 지역업체 참여 평가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은 기 확대(90일→180일, '26.3)

○ (**물품·용역**) 비수도권 기업 우대 시 **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**을 도입하고, **허위 이전**으로 가점 신청 시 **낙찰자 결정 제외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**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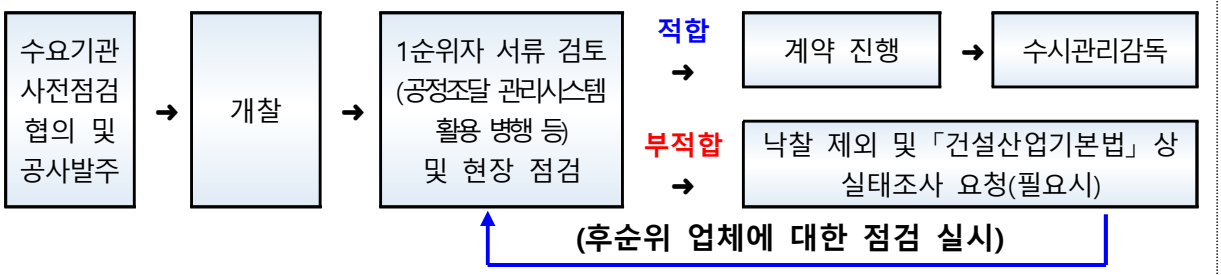
2 (페이퍼컴퍼니 차단) 공사낙찰예정자 심사 시 **현장 사실조사**를 확대하고, 물품**입찰보증금 납부 의무화 확대** 및 **공급물품 등록 요건 강화**

❶ (**입찰자격 사실조사**) 시범특례(1.1~9.28) 결과*에 따른 **정규 제도화 추진** 및 **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 예정자 대상**으로 **사실조사 본격 실시****

* 100억 미만 종합·전문공사 대상 입찰 308건 중 19개사 적발(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약 40% 감소)

** **('26.下)** 100억 미만 종합·전문공사 → **('27.1~)** 300억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공사

< (예시)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절차 >



❷ (**입찰보증금 납부**) **무분별입찰 우려 품목***, **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****에 대하여 **입찰보증금 징구 확대**

* 투찰자수(예 : 평균 100명 이상), 낙찰자 순위 등 종합 고려, 무분별한 입찰 우려 품목 선정

** 업체등록정보 및 입찰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의심기업 선별

❸ (**등록요건 강화**)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**공급물품의 과다등록 제한** 및 **공급물품 유효기간**(1년) **설정** 등 추진('27.上)

3 (실질적 기여 확대) 공사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평가 시, 지역기업 보유 자재·장비 활용 등 **지역균형발전 기여 계획 제출 시 가점 부여 중**('26.4~)*

* 평가 방법 및 사후관리 내용을 입찰 공고문에 포함하여 발주

Ⅴ. 세부과제별 추진일정

추진과제 및 보완방안 관련 조치사항	담당부처 (추진일정)
1. (공사)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	
1-1. 지역의무 공동계약 기준금액 상향(국가계약법 시행령)	재경부 ('27.上)
2. (공사) 지역업체 시공비율(시공능력평가액 인정범위) 확대	
2-1. 시공비율 완화 적용(계약예규)시설공사적격심사,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, 종합심사낙찰제	재경부 ('27.上)
2-2. 시공비율 초과 감점(계약예규)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, 종합심사낙찰제	재경부 ('27.上)
3. (물품·용역)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비수도권 기업 우대	
3-1. 적격심사 지방기업 소재 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(조달청)적격심사세부기준	조달청 ('27.1분기)
3-2. MAS 2단계 경쟁 지방기업 소재 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(조달청)MAS처리규정	조달청 ('27.1분기)
4. (물품·용역) 지방이전 중소기업 입찰평가 우대	
4-1.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납품실적평가 우대 신설(조달청)적격심사세부기준	조달청 ('27.1분기)
5. (공통)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 허용	
5-1. 제한경쟁 사유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추가(국가계약법 시행규칙)	재경부 ('27.上)
6. 보완방안	
6-1. 실제 시공 여부 반영 시공평가 항목 신설(건설엔지니어링및시공평가지침)	국토부 ('27上)
6-2.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근거 규정(계약예규)시설공사적격심사	재경부 ('26.下)
6-3. 물품공급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 강화(조달청)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	조달청 ('26.下)